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호세아

희망 없는 자에게 희망을

(호세아 2: 2 - 23)

원로목사 이종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본문은 불성실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가르칩니다.

세 아이의 어머니 고벨이 남편과 자식을 두고 제 길로 갔습니다. 이것은 호세아 슬픔이자 곧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1. 고벨의 비극

고벨의 걸모습은 아름다웠는지 모르나 그녀가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천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이끌리어 보이지 않는 영원을 상실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특하고 거짓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과 바꾸고자 하는 유혹을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고벨이 호세아를 떠난 이유도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쾌락뿐 아니라 물질의 유혹을 따라 세상으로 갔습니다. 호세아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고귀한 것인지를 알았다면 고벨은 남편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을 떠난 고벨이 처음에는 이런저런것들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듯 했지만 점차로 좌절과 낙담이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비로소 남편을 생각합니다. 고벨은 모든 것을 빼앗긴 후에야 호세아의 사랑을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습니다(8절).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이유로도 구별되지 아니하는 사랑 자체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성취에 빠져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여전히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6절).

호세아의 사랑을 버리고 떠난 고벨의 길을 하나님은 가시, 곧 고난을 주어서라도 그 길을 막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갈때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하십니다.

본문에는 '그러므로'가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6, 9, 14절).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취하신 행동은 '그러므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가시로 그 길을 막겠다는 것입니다(6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접근하는 길을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남편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시울타리를 치실 때 우리는 빨리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더 무서운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포도주를 그것이 맞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삼을 빼앗으리라"(9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때때로 경제적인 궁핍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

십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후 모든 것을 잃은 다음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2. 소망의 문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여렸을 때와 애굽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15절).

아골골짜기는 아간이 범죄하므로 민족 전체가 고통당할 때 백성들이 아간을 돌로 쳐 죽여 묻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저주가 있는 그 곳에 소망의 문을 세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를 푸른 초장을 만드시어 복이 임하는 곳이 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사 65:10). 하나님은 세상으로 떠난 자들을 가시울타리로 막아보시기도 하고, 소유를 빼앗기도 하고,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세워주면서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하리라"(16-17절).

세상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우상화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18절). 그래서 모든 전쟁이 없어지고 땅의 모든 들 짐승과 더불어 평안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19-20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가들어 우리를 보호하고 진실되게 약속을 지키시어 인도하실 것입니다. 전에는 저주를 받아 흘렸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자, 로루하마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곧 로암미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시겠다고 합니다(22-23절).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면서 언약의 종교입니다. 이 언약은 쌍방 언약이 아닌 일방 언약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우리가 이 언약을 배신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며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암미라 하실 것이고 이 땅에 심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안식년 즉각 시행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제101회 총회 주제 : "다시 거룩한 교회로"(요사서 1: 17, 레위기 19: 2)

행정지원본부

03128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309호(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전화 (02)741-4350(내선9212) 전송 (02)6008-2982 담당 : 윤미경 실장

문서번호	예장총 제101-450호
시행일	2017. 1. 11.
수신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 외 17인
참조	서기
제목	헌법해석 통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 외 17인이 제출한 "질의서(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사에 대한 서울강남노회의 위임목사 청빙승인 결의 및 목사 임직행위의 효력에 관한 질의, 서울
교회 안식년 및 재신임규정에 대한 질의), (2016.11.9.)"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음을
통보합니다.

해석 : 질의(1),(2),(3)에 대하여 "2009년(행위 당시의 법작용) 당시 헌법 정치 제31조(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제1항, 헌법시행규정 제23조(다른 교파
의 목사청빙) 제1항,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
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거
1년 이상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목사고시에 응시한
행위는 위법이며 무효이다."

질의(4)에 대하여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지교회 목사와 장로의 건강과 영적
재충전을 위하여 안식년을 갖도록 하는 의무규정에 대해 헌법에
는 제한규정이 없고, 오히려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36조(목사
의 휴무), 제6장(장로) 제46조(장로의 휴무), 헌법시행규정 제25
조(목사, 장로의 휴무)에 의거 지교회 내부규정(정관)에 의한 안
식년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질의(5)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4장(교회의 직위) 제22조(항존직), 헌법 권징 제1장
(총직) 제4조(재판의 원칙) 제1항, 제6조(책벌의 원칙) 제2항, 헌
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선택) 제7항 '헌법 권징 제4조 1항, 제6조
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
다.'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 등을 살펴 판단하건대,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부임시 서울교회 정관 규정 준수에 대한
전제조건 하에 부임하면서 당회와 성도들에게도 공개적으로 약속

1

있었는데도, 당시 노회장은 박노철 목사가 청목과정 미이수자임을 다 알
면서도 2010년 5월에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불법)추천함으
로써 박노철 목사가 성경, 교회사, 헌법, 논술, 설교 중 설교를 제외한 과
목은 합격률 하였고, 설교는 불합격되었으며, 이에 다시 2011년 5월에 목
사고시 설교과목에 재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같은해 7월 29일 합격자
발표)

2. 서울교회 안식년 및 재신임규정 질의에 관한 개요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내용(1998.8.15. 제정))

- 1) 담임목사와 장로는 6년 시무후, 1년의 안식년을 가진 뒤, 재시무 복귀전
그 해 10월에 재시무투표를 받아야 한다.
- 2) 총회나 노회의 정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당회 허락 하에 안식년을 반납할
수 있다. (단, 그 경우에도 재시무투표는 안식년을 가진 아들과 함께 받아
야 한다)
- 3) 재시무투표는 당회원 2/3 찬성을 얻어야 하고,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공
동의회에서 다시 신임투표를 물어 재시무 할 수 있다(자의사직하여 복직하
는 경우와 같이 2/3찬성 얻어야 함)

질의(1) 그렇다면 박노철 목사는 2010년 5월에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에서 1년 이상 소정의 과목(성경, 교회사, 헌법, 논술 등)을 이수하지
도 않은 상태에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한 행위가 적법하고 합격처분
이 유효한 것이지요

질의(2) 따라서 2011년 11월 8일 서울강남노회 정기노회에서 박노철 목사
에 대한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승인을 한 결의는 무효가 아닌지요

질의(3) 현재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4) 지교회 내부규정으로 안식년 제도를 가지는 것이 총회 헌법에 위배되
는지요

질의(5) 1998년 8월 15일 서울교회 안식년 및 재시무 규정 제정에 따라 2011
년 1월 1일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에 부임 할 당시 이미 서울교회는
위 규정을 13년째 시행하고 있었고 본인 역시도 서울교회에 부임시 이
규정 준수에 따른 약속을 하고 부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규정
에 따라 지금의 원로목사인 이종운 목사도 1998년, 2005년 2차에 걸
쳐 재시무 투표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에 부임
한 2011년도부터 6년간 장로들의 안식년 및 재시무 투표를 지금까지
집행하여 왔고 2015년 12월 9일 정기 당회시 박노철 목사는 교회의
규정대로 2017년 10월에 재신임을 받겠다고 재확인된 사실이 당회록
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교회 2대 목사인 박노철 목사도

3

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임 후 지금까지 안식년시행과 재시무
투표규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인 역시도 서울교회
정관 규정에 따라 6년간 장로들의 안식년 및 재시무 이행에 관한
투표를 지금까지 본인이 집행하여 왔으며, 2015년 12월 9일 정기
당회시에도 교회의 규정대로 2017년 10월에 재신임을 받겠다고
재확인된 사실이 당회록에도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박노철 목사
는 목회자의 양심과 금반언의 원칙, 신뢰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
칙에 따라 6년간 본인이 집행해 왔던 바에 따라, 해당되는 자신
까지는 위 규정을 준수하여 목회자로서 성도들에 대한 언행일지
의 분이 되어야 하고, 그 후로부터 위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헌
법시행규정 제1장(총직) 제3조(적용범위) 제3항에 근거하여 정관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내용 / 1.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 대한 서울강남노회의 위임목사 청빙승인 결의 및
목사 임직행위의 효력에 관한 질의개요

- 1) 박노철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소속 목사로 총회교회에서 시무하
였고, 다시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목사로 분당지구총교회에서 시무하였
고, 독립교단이던 구리지구총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하였으며, 그 후
본 교단 소속 서울교회의 초대목사인 이종운 목사의 후임으로 청빙 준비
차 2009년 8월 동시목회를 위한 전도목사로 부임하여, 그 해 9월(가을학
기) 본 총회 직영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청목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입학하여 2010년 9월 이수예정이었다, 2010년 5월에 1년 이상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설교를 제외한 과목에
합격한 후, 2011년 5월에 설교과목에 재응시하여 합격하여 2011년 7월
29일 총회 목사고시 최종합격자로 발표되었으며, 그에 기하여 2011년 11
월 8일 서울교회에서 개최된 서울강남노회 제49회 정기노회에서 서울교
회의 위임목사로 청빙승인 결의되고 임직을 받았습니다.
- 2) 2011년 11월 8일 당시 총회 헌법을 살펴보면, 정치 제31조(다른 교파의
목사의 청빙) 제1항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로서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본 총회 직영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총회 목사고시에 합
격한 후 노회 석상에서 서약을 한 자는 본 총회 신하 소속노회 목사로 청
빙 받을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3) 박노철 목사는 노회의 허락으로 2009년 9월(가을학기)에 장로회신학대학
교 신학대학원 청목과정에 등록하여, 2010년 9월에 이수할 예정이었습니
다. 그런데, 2010년 5월에 아직 1년 이상 이수를 하지 않은 재학생으로

2

위 규정 및 약속에 따라 마땅히 이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것이
목회자의 도리가 아닌지요. 끝.



총 회 장 이 성
헌 법 위 원 장 고



4

총회재판국의 기각은 총회 헌법에 위배 : 헌법위원회 해석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제101회 총회 주제 : "다시 거룩한 교회로"(로마서 1 : 17, 레위기 19 : 2)

행정지원본부

03128 서울시 중구로 대학로3길 29, 309호(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전화 (02)741-4350(내선9212) 전송 (02)6008-2982 담당 : 윤미경 실장

문서번호 예장총 제101-454호
시행일 2017. 1. 11.
수신 서울교회의 서문석 장로 외 2인
참조
제목 헌법해석 통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서문석 장로 외 2인이 제출한 "헌법질의서(2016.12.20.)"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음을 통보합니다.

해석 : 질의1),①에 대하여 "재판부 설치 및 구성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질의1),②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9조 제4항에 반하는 법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질의1),③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5장(상소) 제2절(항소) 제100조(항소이유) 제8항 위반에 해당된다."

질의1),④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1항, 제6항에 해당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제8항에 해당된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제4항에 해당된다."

질의4)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제8항에 해당된다."

질의5)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9조(당회의 회집)에 위배된다."

질의6)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6항에 해당된다."

질의7)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1항에 해당된다."

질의8)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의 원칙) 제3항에 의거 재판하여야 한다."

질의9)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

5

국원들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뒤집을 만한 상대방의 새로운 증거가 전혀 제출된 바 없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헌법시행규정 제39조 제4항 '재판국장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규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는 규정을 비롯하여 재판 재판절차관련 법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요

③ 제100회 총회재판국의 권징분과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마친 후 제100회 총회가 종결되어 제101회 총회가 열려 총회 이후 다수의 총회 재판국원이 새롭게 구성되어 전원합의부에서 판단하였다면, 당초 권징분과 재판국원이 아닌 새로 임명된 총회재판국원은 헌법 권징 제100조 제8항에서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조항에 해당되는 범규적용의 위반에 해당되는 지요

④ 2016년 11월 17일~18일에 소집된 재판국 첫모임에서 재판국장장과 주심국원은 당초 이 건 재항고 죄과사실 이외에도 기 접수된 재항고장은 물론 첫모임 직전에 추가로 제출된 재항고인들의 준비서면(8.9회)에서 죄과 항목별로, 일자별로 정리되고 추가로 고발된 내용을 사건에 다 알고도 나머지 재판국원들에게는 단순히 위 항령사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검찰 무혐의처분만을 근거로 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주도하여 특별히 새로 임명된 재판국원들은 전후 상황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기각 결정을 하게 하였는바, 이는 담당 국장과 주심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유기하고 오히려 직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재판상의 결정을 이루어내지 못하도록 부당한 재판진행을 한 것이 아닌가요, 또 이는 신규 재판국원 9명을 기망한 행위로 권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과를 범하고, 이들의 정당한 재판심리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권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죄과가 아닌지요

질의2) 재항고 전원합의부 재판진행절차에 관한 헌법 질의-당 재항고심에서 재항고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8),9)는 제101회 재판국이 구성된 이후에 제출하였는바 그 경우 전원합의부 재판국은 지체없이 그 부분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반박준비서면을 재판국에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이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재판국은 이러한 공평절차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앞서 권징분과에 제출된 자료만을 토대로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권징 제124조 8항의 재판국이 증대하고도 명백한 범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가요

질의3) 재판국은 본래 당사자들의 주장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

7

유) 제7항에 해당된다."

질의10)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3절(재판) 제82조(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11)에 대하여 "판결(결정)은 재판국의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의 원칙) 제3항에 의하지 않고 한 결정(판결)이라 하면 정당한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사건번호 제100-44호, 판결개요-총회재판국은 2016년 11월 18일, 사건번호 제100-44호 위 재항고건 결정에서, 고발된 여러 죄과사실 중 하나에 불과한 법인카드 횡령건에 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문 하나만을 인용하여 재항고 신청이유가 없다고 한 후 나머지 죄과사실에 대하여는 증거판단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단순히 '인정하기 부족하여 재항고신청 이유가 없다' 며 일방적으로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

질의1) 총회재판국 조직과 절차에 관한 헌법 질의-당 사건을 총회 제100회기 총회재판국 권징재판 분과에 배당하여 심리를 하였으나 합의도출 실패로 더 이상의 심리를 중단한(2016.9.5.)후, 제101회기 총회로 이첩되어 제2회(10.17, 11.17-18)에 걸쳐 재판국 회의가 있었음에도 각 분과도 조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원합의부(2016.11.17.-18) 회의를 열어 본 사건을 심리, 결정한 것에 대하여

① 헌법시행규정 제73조(재심재판) 제13항 '재심재판국은 제1차 조직회의를 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심을 종결하여야 한다' 의 제1차 회의의 조직회의로 규정한 헌법시행규정을 준용할 때, 총회재판국이 제101회기 총회 이후, 제1차 회의에서 권징재판 분과와 행정쟁송 재판 분과를 조직하지 않은 것은, 헌법 권징 제11조의2(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제1항 '총회재판국에는 권징재판 분과, 행정쟁송 재판분과 및 전원합의부를 둔다' 의 재판부 설치 및 구성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지

② 당 사건에 대하여 당초 제100회기 총회 재판국 권징재판 분과에 배당하여 심리하여 국원 6명중 5명만 유죄에 의한 책벌에 동의하는 바람에 전원합의부로 이관되었으며(이 절차도 앞서 회기의 권징분과에서 정식으로 전원합의부로 이관되었는지 여부도 당사자에게 통보가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기가 바뀌어 제101회기 총회재판국장 및 상당수 재판국원이 교체되었고 아직 분과조직이 채 구성되지 않은 가운데 이 사건 심리를 위한 변론기일을 별도로 잡지도 않고, 또 고발된 여러 죄과들에 대한 심리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기일통지도 하지 않은 채, 또 앞서 권징분과에서 대부분의

6

고(권징 제101조) 그 밖에 주장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당연히 이 사건 변론과정에 현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판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결정이유에 의하면 서울교회 분쟁의 발달으로 변론과정에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당사자 쌍방 어느 누구도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이 결정문 모두에 전제사실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변론에 나타나지도 아니한 내용을 재판의 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위와 같은 심판자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으로 역시 권징 제124조 제4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요

질의4) 2016년 11월 17~18일, 당일 지정된 재판국 회의실에서 당 건의 재판국장 주심 목사(3년초로 처음 국원이 되었으며 앞서 권징분과변론재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이 건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함)가 미리 결정문까지 작성하여 와서, 앞서 재항고인 측에서 교체된 국원들의 사전이해와 파악을 돕기 위하여 2016년 11월 10일에 제출한 재항고인 준비서면(8회,9회)에 대한 답변이나 준비서면을 다른 재판국원들에게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은 채, 2016년 11월 17~18일 기간에 단지 지방검찰청에서의 불기소결정을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로 간주하고 고소장과 재항고장 및 범죄 사실 요지에 적시한 여러 나머지 죄과사실 [①수칙]의 당회 소집 불허 및 거부한 행위, ②서울교회 원로목사에 인격 모욕과 명예훼손 ③담당목사로서의 수칙에 걸쳐 설교 표절하여 서울교회 공예배에서 선포한 행위] 까지도 모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것처럼 오도하여, 다른 죄과 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처럼 기각 결정을 한 것인바, 이는 명백히 헌법을 위배하고 증거 취사선택에 중대한 오류를 범한 잘못이 있으며 따라서 권징 제124조 제8항의 재판국이 증대하고도 명백한 범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질의5) 재항고 결정문에 판단이 누락된 중요사항에 관한 헌법 질의-재판국원들이 당회장이 당회를 거부하거나 당회소집을 거부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기각 결정된 것은 총회 헌법 정치 제69조(당회의 회집)를 위배된 것이 아닌지요

질의6) 당회장이 당회진행을 거부하고 성안된 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거나 토론을 종결한 후에도 표결처리 등 안전처리를 거부하여 당회가 파행되게 한 죄과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였는바, 이러한 당회진행거부나 안전처리 거부는 물론 매일 첫째 수요일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당회조차 근거도 없는 소란의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아예 소집자체를 거부하는 행위가 권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죄과가 아닌

8

가요

- 질의7) 피재행고인 목사가 여러차례 표절 설교하고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목회자를 무단이탈 한 죄과사실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권징 상의 죄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는 성경상의 중대한 계명에 위반된 행위들이 아닌가요
- 질의8) 제자인 후임목사가 스승이며 전임목사를 공개석상에서 표절했다며 인격 모욕 하였음에도 이를 권징 제3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과가 아니라고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이 정당한가요
- 질의9) 이러한 5),6),7),8)의 죄과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없이 그냥 모두를 포괄하여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한 것은 결국 헌법 권징 제124조 (재심사유) 제7항(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요
- 질의10) 2016년 11월 17일-18일에 소집된 총회재판국은 죄과사실중 범인카드 횡령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되었으나 이미 정당한 항고이의절차에 따라 고등검찰청에서 재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일방 당사자 편에 서서 기각결정을 하였는바, 위 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는 항고기간 도과 등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그것만으로서 아직 권징 제8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국가법원의 확정판결서도 아닐 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도 아니므로 결국 이는 이건 결정에서 기각사유로 인용할 만한 당연히 증거가능력을 부여할만한 결정적인 증거서류는 아니지 않는가요
- 질의11) 또 위와 같이 관련 진실이나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변론에서 현 출되지도 아니한 사유를 재판 외에서 개별적인 통로를 통하여 전해듣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해명도 듣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서둘러 기각결정 하였다면 이는 중대한 벌리 판단 오류와 사실판단 오류를 범한 것이 되는데 이러한 결정이 유효한 결정인지, 무효의 결정인지요. 끝.

총회장이 성
헌법위원장 고 백



1 2 3 4

위임목사 청빙 승인 결의 및 목사 임직 행위 및 서울교회 안식년 및 재신임 규정에 관한 질의에 대한 헌법 해석 통보

- 박노철 목사는 목회자의 양심과 금반언의 원칙, 신뢰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안식년 제도 및 재신임 제도를 6년간 본인이 집행해 왔던 바에 따라, 해당되는 자신까지는 위 규정을 준수하여 목회자로서 성도들에 대한 언행일치의 본이 되어야 한다.

- 박노철 목사의 교단 목사고시 응시는 위법이며 무효이고, 따라서 박노철 목사에 대한 서울교회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및 노회의 청빙승인결의는 모두 무효이다.

-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에서 헌법상 부여된 유일한 헌법해석기관으로서,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나 해당기관(재판국을 포함한 총회와 산하 모든 기관 포함)은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5 6 7 8 9

노문환장로 외 17인은 작년 총회재판국에 담임목사권징청구 재판을 청구하였는 바(사건번호 제100-44호) 100회기 총회재판국 권징재판 분과에 배당, 심리중 다음(101) 회기로 이첩되었다. 그런데 101회기 총회재판국은 각 분과가 조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6년 11월 17-18일 전원합의회 회의를 열어 본 사건을 기각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서문석 장로 외 2인이 11개의 질의를 헌법위원회에 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총회재판국의 기각 결정은 11개 질의에서 제기된 문제가 모두 총회 헌법에 위배되었고, 이 판결이 정당한 결정이 아님을 통보해 왔다.

박노철 목사 안식년 준수하라 / 교단 목사고시 응시는 위법이며 무효다

1.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 통보

총회 헌법위원회는 2017. 1. 11.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총회장 명의로 통보 하였는바,

안식년에 관한 규정은 총회헌법에 제한규정이 없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재시무투표에 관한 규정은 박노철 목사는 자신까지는 위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헌법과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후로부터 총회 헌법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가. 안식년 규정부분에 관하여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지교회 목사와 장로의 건강과 영적 재충전을 위하여 안식년을 갖도록 하는 의무규정에 대해 헌법에는 제한 규정이 없고, 오히려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36조(목사의 휴무), 제6장(장로) 제46조(장로의 휴무), 헌법시행규정 제25조(목사, 장로의 휴무)에 의거 지교회 내부 규정(정관)에 의한 안식년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재시무투표 규정 부분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4장(교회의 직원) 제22조(항존직),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의 원칙) 제1항, 제6조(책벌의 원칙)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선택) 제7항 ‘헌법 권징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 등을 살펴 판단하건대,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부임시 서울교회 정관 규정 준수에 대한 전제조건 하에 부임하면서 당회와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임 후 지금까지 안식년시행과 재시무투표규

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인 역시도 서울교회 정관규정에 따라 6년간 장로들의 안식년 및 재시무이행에 관한 투표를 지금까지 본인이 집행하여 왔으며, 2015년 12월 9일 정기당회에서도 교회의 규정대로 2017년 10월에 재신임을 받겠다고 재확인된 사실이 당회록에도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박노철 목사는 목회자의 양심과 금반언의 원칙, 신뢰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6년간 본인이 집행해 왔던 바에 따라, 해당되는 자신까지는 위 규정을 준수하여 목회자로서 성도들에 대한 언행일치의 본이 되어야 하고, 그 후로부터 위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3항에 근거하여 정관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총회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의 효력 :

- 최종권위, 즉각 시행력, 재판국 포함 모든 기관 지속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에서 헌법상 부여된 유일한 헌법해석 기관으로서,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나 해당기관(재판국을 포함한 총회와 산하 모든 기관 포함)은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합니다.

3. 박노철 목사의 교단 목사고시 응시는 위법이며 무효이고, 따라서 박노철 목사에 대한 서울교회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및 노회의 청빙승인결의는 모두 무효이다

총회 헌법 위원회는 위 헌법해석 통보에서,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 2대 목사로 청빙준비차 2009년 8월 동사무회를 위한 노회의 전도목사로 부임하

여, 그해 9월(가을학기)에 총회 직영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청목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입학하여 2010년 9월 이수 예정이었는데, 2010년 5월에 당시 총회 헌법상 이수기간인 “1년 이상”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설교를 제외한 과목만 합격한 후, 2011년 5월에 설교 과목에 재응시하여 합격하여 2011년 7월 29일 총회 목사고시 최종합격자로 발표되었으며, 그에 기하여 2011년 11월 8일 서울강남노회 제49회기 정기노회에서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승인결의되고 임직을 받은 것에 대하여,

“2009년(행위 당시의 법적용) 당시 헌법 정치 제31조(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제1항, 헌법시행규정 제23조(다른 교파의 목사청빙) 제1항,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거 1년 이상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목사고시에 응시한 행위는 위법이며 무효이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박노철 목사에 대한 서울교회 청빙 결의와 그에 대한 서울강남노회의 청빙승인결의는 각각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피고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총회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의 효과는 교단 산하 모든 기관에서 즉각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유권해석 통보가 온 2017년 1월 12일부터 피고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자격은 무효로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박노철 목사는 이 사건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당사자적격 또한 즉각 상실되었으므로, 그 점에서도 이 사건 소송은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1월 정기 당회 또 파행

지난 수요일(1월 11일) 오후 8시에 열린 1월 정기 당회가 아무런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채 파행되었다. 당회에는 작년 10월부터 처리되지 못한 안건이 산적되어 있고, 현재 교회 모든 행정과 예산 집행이 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파행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의 당회는 오직 법과 질서와 원칙 가운데 안건을 처리하여 교회의 기관과 부서, 식당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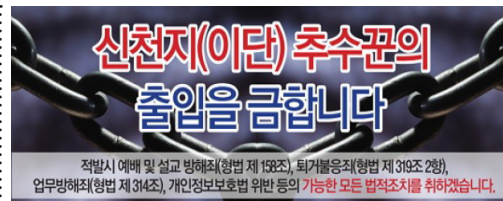
1월 14일(토) - 임시당회 결의사항

지난 1월 12일(목)에 접수 된 헌법위원회 유권해석과 법리 판단에 의거하여 박노철 목사는 2017년 1월 1일부터 안식년이 시작 되었다.

당회는 1월 14일(토), 임시당회를 소집하고 결원상태가 된 당회장을 대신하여 이종윤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우 다음과 같은 안건을 결의하였다.

1. 임시 당회장의 파송을 노회에 청원한다.
2. 당회장 결원상태에 따른 예배 주관의 건

- 오늘 1, 2, 3부 예배 설교 : 김철홍목사
 - 찬양예배 : 부목사
 - 수요일예배 1, 2부 : 부목사
 - 새벽기도회 : 부목사
- 장소는 당분간 101호로 변경
- 금요기도회 : 잠정 중단
3. 박노철목사는 안식년 기간 동안 508호 목양실 사용을 금한다



9층카페 폐쇄 화요일 '사랑의 쌀' 구제중단

우리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운영해오던 9층 카페가 폐쇄되었다. 우리교회 카페는 성도들이 차와 커피를 마시며 드린 헌금으로 백미를 구입하여 매주 화요일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구제를 하여왔다. 그러나 지난 주 강남구청 직원들이 다녀간 후 폐쇄를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던 구제도 함께 중단된다. 다만 뜨거운 물은 준비되어 있으니 일회용 커피를 마실 수 있다.

헌법시행규정 관련 조항

- 헌법시행규정

제1조 [목적]이 헌법시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편 정치 및 제3편 권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완함으로써 타당한 법 해석과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이 규정에서 타당한 법 해석이라 함은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말하며, 법 시행이

라 함은 법의 구체적인 실현 적용을 말한다.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1. 헌법위원회는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
3. 제1항의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
4. 헌법위원회가 법리판단을 할 때 재판국의 판결에

관하여 법리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 판단이 헌법 권징 제124조 제6항에 해당될 때 재심청구권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6.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것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을 1회 요구할 수 있다.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의 효력에 관한 헌법해석

(제 92 회기) 5. 재판국과 헌법위원회의 관계와 유권해석의 효력

헌법위원회가 유권해석의 전권을 갖고 있으므로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을 할 수 있다. --

③ 헌법 시행규정 제 36조(헌법해석의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 3항의 의미는 헌법위원회의 헌법 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기속력)을 갖는 의미를 선언한 것이며, 유권해석의 결과는 재판(사법)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규범(법적 잣대)이 되며, 행정에 있어서 집행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이다.

(제 92 회기) 62. 총회 재판국이 상고 사건을 심리

판결함에 있어 적용할 헌법의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재판국의 견해와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다른 경우

헌법위원회가 헌법해석의 전권을 갖고 있으며, 총회 재판국뿐만 아니라 총회의 그 어느 부, 위원회나 산하기관도 헌법 해석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총회 재판국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한다

(제 91 회기) 61.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의 법적 구속력

“헌법시행규정 제 36조 1항에 의하면 헌법위원회는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을 제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해석 기능만을 의미하지 않고 판단 기능까지 부여하므로 때로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입법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오해할 수 있으나 헌법정신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헌법이나 헌법시행규정의 개별 법조항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헌법이나 이 규정을 보완할 수 있고 보완한 해석은 해석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니므로 총회 재판국의 법적용을 위한 규범이 된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을 기속한다”.

재판국과 헌법위원회의 관계와 유권해석의 효력

5. 재판국과 헌법위원회의 관계와 유권해석의 효력 (제92회기)

서울북노회장 서정호 목사가 제출한 ‘헌법 유권해석(2007. 10. 4)’ 건에 대하여 질의1) 헌법 기관인 재판국의 판결이 법률상 하위조직인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과연 헌법의 법리체계상 가능한 일인지, 헌법시행규정 제 36조 3항의 위헌 여부 건은

“① 헌법에 의하여 조직,구성되는 재판국, 기소위원회와 총회 규칙에 의하여 조직, 구성되는 상임 부, 위원회 간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 재판국도 총회 규칙 제 11조에 의한 9개의 상임부서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 규칙 제 39조에 의하여

조직, 구성되지만 총회의 최고 상설 집행기관 및 총회 폐회 후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데, 헌법에는 임원회의 조직,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렇다고 하여 임원회를 헌법기관인 재판국의 하위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권징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판국과 기소위원회의 조직, 구성을 헌법에 규정하였을 뿐 헌법기관이라 하여 상위, 우위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유권해석이란 교단의 최고 권위있는 기관에 의한 구속력(기속력)있는 법규의 해석방법을 말하며,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으로 구분된다. 본 교단의 경우 헌법위원회의 조직, 구성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 2편(정치) 제

87조(총회의 직무) 4항, 제 124조(재심사유) 6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 36조(헌법해석의 질의시행 및 재심의 요구) 3항이며, 또한 위의 조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 2조(용어), 제 3조(적용범위) 2항, 제 36조(헌법해석의 질의시행 및 재심의 요구) 1항 및 총회 규칙 제 14조 2항에 의하여 헌법위원회가 유권해석의 전권을 갖고 있으므로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을 할 수 있다.

③ 헌법 시행규정 제 36조(헌법해석의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 3항의 의미는 헌법위원회의 헌법 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기속력)을 갖는 의미를 선

연한 것이며, 유권해석의 결과는 재판(사법)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규범(법적 잣대)이 되며, 행정에 있어서 집행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이다.

④ 또한 헌법 시행규정은 법 체계상 법 형식상 헌법의 하위 법규임에는 틀림없으나, 헌법 시행규정 제 1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완함으로써 타당한 법해석과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실질적으로는 헌법의 위임명령 및 집행명령 뿐만 아니라 헌법 자신을 보완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

⑤ 따라서 위 논리로 헌법 시행규정 제 36조 3항은 위헌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2) 가. 기독교 교인은 누구든지 본 교단 소속이 아니라도 우리 교단 치리회에서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지는 것인지 여부와 나. 책벌을 받아 제명(출교)된 자나 실종교인은 교인의 자격이 정지된 자들로써 실제로는 우리교단(교회)소속 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들도 우리 교단 치리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의 건은 "우리 교단 소속 교인에 의하여 범죄 피해를 받은 자는 교단 교인이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

62. 총회 재판국이 상고 사건을 심리 판결함에 있어 적용할 헌법의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재판국의 견해와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다른 경우 (제92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필곤 판사가 제출한 '사실 조회서(사건 2007가합 76875/2008. 5. 14)' 건에 대하여

조회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이 상고 사건을 심리 판결함에 있어 적용할 헌법의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재판국의 견해와 같은 총회 산하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다른 경우 총회 재판국은 어느 해석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건은 "우리 교단 총회 재판국은 상고사건 기타 헌법이 그 관할을 인정된 사건에 대하여 사실인정과 사실판단을 전제로 하여 헌법과 헌법시행규정 기타 총회의 법규를 적용하는 기관이며 총회 헌법위원회는 헌법 제 12편 정치 제 12장 총회 제 87조(총회의 직무) 4항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 2조(용어)와 총회

규칙 제 12조(용어), 제 36조(헌법해석의 질의시행 및 재심의 요구) 1항 '~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을 제안한다' 및 3항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에 의거하여 헌법위원회가 헌법해석의 전권을 갖고 있으며, 총회 재판국 뿐만 아니라 총회의 그 어느 부, 위원회나 산하기관도 헌법 해석권이 없다. 그러므로 총회 재판국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조회2) 총회 재판국에 계류중인 상고 사건에 관하여 적용할 헌법 규정에 관하여 헌법위원회의 해석권이 있는지 여부의 건은 "구 헌법조례는 2007년 6월 28일부로 폐기되었고 헌법시행규정 제 36조 2항에 의거 언제든지 총회 재판국 계류중이라도 해석권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조회3) 헌법위원회의 헌법 해석이 해석권을 넘어 입법 행위에 준하는 해석이 가능한지와 해석권의 범위를 넘은 헌법의 해석이 재판국을 기속하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36조 1항에 의하면 헌법위원회는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을 제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해석 기능만을 의미하지 않고 판단 기능까지 부여하므로 때로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입법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오해할 수 있으나 헌법정신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헌법이나 헌법시행규정의 개별 범조항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헌법이나 이 규정을 보완할 수 있고 보완한 해석은 해석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니므로 총회 재판국의 법적용을 위한 규범이 된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을 기속한다"는 것으로 해석.

61.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의 법적 기속력 (제 91회기)

서울북도회장 서정호 목사가 제출한 '헌법위원회의 헌법유권해석의 효력에 대한 질의(2007. 7. 4)' 건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의 법적 기속력에 대한 근거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87조(총회의 직무) 4항 및 헌법 제 3편(권장) 제 124조(재심) 6항과 총회 규칙 제 14조(상임위원회의 임무) 제 2항과 헌법 시행규정 제 2조(용어), 제 3조(적용범위), 제 36조 3항(헌법해석의 질의시행 및 재심의 요구)에 의하여 총회에 기속력을 갖는다"는 것으로 해석.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안내

· seoulch@hanmail.net

위의 이메일로 ①성명 ②주민번호 ③전화번호 ④주소 ⑤가족합산여부를 적어 보내주시면 연말정산자료를 파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02-558-1106(담당: 송미라 권사)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월17일(화) 52회백양세미나와 연세신학인의 밤 행사에 참석한다. 1월18일(수) 한국로잔위원회 총회에 참석한다.

■ 득녀: 11교구 길이세 성도, 최진경 성도 (16교구 임송자 권사 장남 가정)

■ 금주의 식사 제공 : 윤혜련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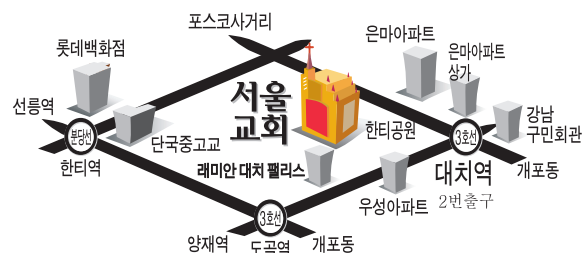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2. 교육부서를 담당하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다음세대의 부흥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3. 이 땅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를 도말하시어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